◉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 제2026-278호**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위한「방송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36687호)으로 가상광고 허용 프로그램 범위가 확대되고 크기 제한이 완화됨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상광고가 교양프로그램으로 허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제7조제3항)

나. 가상광고 크기 제한이 기존 1/4 이하에서 1/3 이하로 완화됨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안 제6조제2항)

다. 종전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던「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조항을 본칙으로 이동하여 조문체계 정비(안 제9조, 제10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6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방송광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 전자우편 : no0ng@korea.kr
- 팩스 : (02) 2110-01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전화 (02) 2110 - 1264, 팩스 (02) 2110-0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